

서울특별시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제안 설명

□ 존경하는 조상호 위원장님!

그리고 선배 · 동료 의원님 여러분!

국민의당 송파구 제5선거구 출신 김영한 의원입니다.

「서울특별시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
조례안」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.

□ 본 개정안의 제안 이유는,

도시농업의 정의에 곤충사육(양봉 포함)을 추가하고 4월 11일
을 도시농업의 날로 지정하는 등 최근 개정된 「도시농업의
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의 내용을 반영하고 도시농업위원
회의 소위원회 설치·운영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는 등 효율적
인 도시농업 지원을 위함입니다.

□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.

첫째, 제2조 도시농업, 도시농업관리사 등 개정된 「도시농업
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규정을 정비하는 것
입니다.

둘째, 제6조의2 도시농업위원회의 전문적·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소위원회의 설치·운영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는 것입니다.

셋째, 제13조의2 4월 11일을 도시농업의 날로 정하고 행사와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할 수 있도록 신설하는 것입니다.

넷째, 제16조 청문절차에 도시농업관리사의 자격 취소 또는 정지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는 것입니다.

다섯째, 제20조 도시농업의 활성화를 위한 지원 사업에 사회적 약자 및 어르신·어린이를 위한 반려식물 보급 등에 관한 사업, 농부의 시장에 관한 사업 등을 추가하는 것입니다.

□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!

- 본 개정안은 도시농업의 분야가 확대됨에 따라 다양한 농업활동에 대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취지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무엇보다 시민의 수요를 충족한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.
- 또한, 도시농업의 활성화를 위한 홍보와 도시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시행계획의 수립, 도시농업 관련 연구, 기술개발 및 홍보에 관한 사항, 도시농업 증장기 비전 설정 등에

대한 심의·자문 역할을 하는 도시농업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본 개정안을 제안하였다는 점을 깊이 헤아리시어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.

감사합니다.